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박영길	직급	연구위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관련사업 (예산항목)	○ (수탁) 2024년 해양영토전문가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사업기간 : 2024.03.12. ~ 2024.11.30.)					
출장기간	2024.05.14(화) ~ 2023.05.19(일) (3박 6일)			출장지	미국 (뉴포트)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05.14(화)	부산(07:00) → 인천(09:30) → 보스턴(10:30)		항공 이동	KE1406 KE0091	
		보스턴 → 뉴포트		차량 이동		
	05.15(수) 오전	미 해군대학		세션 5 : Normative Authority and Competition in International Law 세션 6(기조강연) 컨퍼런스 참석		
	05.15(수) 오후	미 해군대학		세션 7: Special Operations, Space, and Cyber Law 세션 8: Fireside Chat ("Israeli Operations and the Law of Armed Conflict") 컨퍼런스 참석		
	05.16(목) 오전	미 해군대학		세션 9: Allied Perspectives on Threats to a Free and Open Indo-Pacific 기조강연 : Mr.Hideshi Tokuchi, President,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Tokyo, Japan, "Threats to the Rule of Law in the Indo-Pacific" 세션 10: Commercial Vessels in the Law of Naval Warfare 컨퍼런스 참석		
	05.16(목) 오후	미 해군대학		세션 11: : Emerging Issues in Hybrid Warfare at Sea 세션 12: Confronting Threats in the Maritime Domain		

			컨퍼런스 참석	
	05.17(금) 오전	미 해군대학	세션 13: Newport Manual 2.0 Peer Review Discussion (Chapters 1-4) 세션 14: Newport Manual 2.0 Peer Review Discussion (Chapters 5-8) 컨퍼런스 참석	
	05.17(금) 오후	미 해군대학	세션 14: Newport Manual 2.0 Peer Review Discussion (Chapters 5-8) 세션 15: Newport Manual 2.0 Peer Review Discussion (Chapters 9-12) 컨퍼런스 참석	
	05.17(금)	뉴포트 → 보스턴	차량 이동	
		보스턴(19:13) → 뉴욕(+1 00:50) → 인천(+1 05:20)	항공 이동	KE3935 KE0086
	05.19(일)	인천(06:25) → 부산(07:35)	항공 이동	KE1405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달성. 해양안보 관련 최근 쟁점들과 해양법의 새로운 논의들을 파악하는 계기가 됨 ○ 주요 성과 - 뉴포트 매뉴얼 관련해서 한국의 실행들이 수정 매뉴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해군과 성과 공유(해군발전자문위원회 해양법분과위, 해군대학·해군사관학교 교수 등)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해군이 추진 중인 뉴포트 매뉴얼의 한국어판 발간 자문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 이 컨퍼런스에는 매년 일본 측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음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 및 해양법 안보 관련 대학 교수들) - 국제적 논의 동향, 일본의 입장 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한국도 해군, 해경의 관계자들과 해양법 안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05.15.(수) 컨퍼런스 참석
수행계획	☐ 컨퍼런스 참석
수행결과	☐ 컨퍼런스 2일차인 이날은 4개의 기조강연과 3개의 주제발표 세션으로 진행됨 ○ 기조강연은 Harry Harris 전 주한미대사(전 미태평대사령부 사령관), Patrick Huston 전 미육군 준장, Adam Oler 전 미공군 대령, 그리고 Roni Katzir 이스라엘 방위군 준장이 하였음 ○ 주제발표 세션은 국제법상 규범적 권위와 경쟁, 특별작전과 우주, 사이버 법의 도전과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무력충돌법의 주제로 진행하였음 ○ Harris 전 주한 미대사의 기조 강연 정리 - 미국의 국제관계 입장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이슈들을 한문장 또는 키워드 중심으로 12개를 제시해서 각각에 대해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청중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순진(무고)하지 않은 세상에서 순진(무고)하게 행동할 수 없다." 그는 1941년 진주만 습격, 냉전, 9/1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예로 들면서, 악에 대해 강하게 맞서야 함을 역설함 2)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지속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중요한 이해관계(vital interests)를 강조하고 있음을 언급함 3) 국가 안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중시 4) 한미동맹. 특히 북한 김정은의 최근 위협적 행보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화와 군사적 준비태세가 병행해야 함을 강조함 5) 일본. 미일 동맹은 60년간 지속되며 지역 안보와 안정에 이정표적 역할을 함. 지역 안보를 위한 일본의 역할 증대가 주목할 만함 6) 중국. 미중은 현 국제질서에대해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함. 중국은 홍콩반환, 위구르와 티벳에서의 인권문제, 상업적 스파이, 채무의 무기화 등에서 보듯이 국제적 약속과 조약을 지키지 않음. 또한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선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 지역과 세계에 대해 스스로 규칙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음. 그래서 Harris 대사 자신은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함.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에 기반해야 한다."함을 강조 7) 대만. 미국은 대만에 대해 전략적 명료성을 위한 전략적 모호성의 정책(policy of strategic ambiguity in favor of strategic clarity)을 가지고 있음. 우리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과는 달리, 중국의 의도는 명백함. 2021년 Davidson 전 인태사령부 사령관은 6년 이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미 의회에서 증언하였음. Davidson 전 사령관의 경고를 무시할 수 있는가? 올해는 미국이 대만관계법을 제정한 지 45주년이 되는 해임. 대사 자신은 1979년 미 의회의 적극적 행동이 없었다면, 대만은 이미 오래전에 중국에 굴복되었을 수 있다고 봄. (그만큼 미국의 적극적 대만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미임) (여기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음. 이 말은 모호성이 전략이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대만에 대해 모호함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이며, 그것이 미국의 명확한 정책 및 전략이라는 것임. 즉, 분명한 입장을 정립하지 못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8) QUAD. Harris 대사는 개인적으로 QUAD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함. 다만, QUAD가 반드시 단지 4개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QUAD는 나토가 아니며 나토와 같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함. QUAD는 역내의 기회, 도전과제 및 위험들에 대해 전망을 같이하는 그룹들이며, 방위조약이 아니라고 함 9) AUKUS. 호주, 영국, 미국 간 AUKUS 협정은 하나의 방위조약(defense pact)임. Harris 대사는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이 인도태평양의 어디에서 항행하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 날이 수십년씩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곧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함 1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불법적 침략전쟁을 벌이고 잔학한 전쟁범죄들을 자행하고 있음. 이 가운데, 왜 우크라이나가 문제되는가?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로서, 1994년 서방의 요청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핵무기를 포기하였는데,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였는가? 그는 그 답을 두 단어로 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함. 그는 푸틴이 옛날의 국경선까지 구소련의 재건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를 신제국주의나 로만티시즘 등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함. 그러므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조지아, 몰도바 등도 위험에 처해 있으며, 현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발틱 국가들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함. 그러나 푸틴은 15일 이내에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였는데, 현재 2년이 지났는데, 러시아의 군대는 충분히 훈련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장군들은 무능하고 부패했으며, 충분한 군수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무기들 간의 상호결합(연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315천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백대의 전투기, 수천대의 탱크 등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함. 또한 푸틴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였음을 지적.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하며, 동시에 푸틴의 전쟁범죄를 전세계 사람들에게 꾸준히 노출시켜야 함을 강조함 11)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국에 대한 함의.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시진핑은 바보가 아니며, 그는 국제질서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구축하려 들 것이고, 이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함. Harris 대사는 중국이 서방과 미국, 미국의 동맹국들인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 하는 촉매제로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 그는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면서도 완전히 러시아 편에 서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은 러시아 편에 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봄. 바이든 대통령이 2년 전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달 초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러시아를 상당히 많이 지원했으며, 이것이 전쟁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음을 확인하였음을 근거로 제시함 12) 이란. 지난 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테러행위로서, 여성, 어린이, 노인들을 포함해서 수천명이 살해되었는데, 이란은 가자의 하마스, 이라크와 요르단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를 지원하고 있음. 이란은 이들 집단에 정교한 무기뿐만 아니라 정보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사태의 공범이며,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함 ○ 국제법상 규범적 권위와 경쟁 세션: 이 세션에서는 무력충돌법의 규칙 및 원칙, 국제인도법의 주요 내용,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 가자지구 문제가 다루어졌음 - 미국 로즈윌리엄스 대학의 Margulies 교수는 ICJ가 이스라엘에 대한 잠정조치를 내릴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잠정조치의 "긴급성" 요건이 분쟁 비당사국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고 보았음(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노사이드 방지협약 위반을 이유로 ICJ에 제소한 사
--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건) - 세인트 존 법대의 Borgen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법적 쟁점들을 발표함. 특히 그는 자결권(right to self-determination)과 분리독립(secession)의 법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인민”(people)이 자결권을 가지지만, 자결권은 탈식민주의를 제외하고는 “분리독립”의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함. 이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자결권이 아님을 의미함 - 미 국방대학의 Goldenziel 교수는 중국이 사이버 영역에서 기존 규범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규범을 수립하려는 시도에 대해 발표하였음. 그녀는 중국의 국가컴퓨터위기대응센터(CNCERT)가 81개 국가의 274개 컴퓨터위기대응센터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무역/재정 조건들, 정보공유 등을 중국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 있으며, 중국 정부 지원 해커들의 네트워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였음. 또한 미국에서 천안문 광장 사태 기념 줌 미팅을 차단하는 등 중국 정부의 해외 기술 기업들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음 ○ 특별작전과 우주, 사이버 법의 도전과제 세션: - 미국 특별작전사령부와 미 함대 사이버 사령부의 법무관들과 네브라스카대학의 Dunk 교수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군사작전 및 무력 충돌시 제기되는 법적 문제들에 대해 발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아직까지 국제법 및 국내법으로 규범화되지 않은 가운데,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미국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기조강연 및 제10세션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무력충돌법: 오후 시간의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주제로 논의가 전개되었음. 미 해군대학의 Oler 교수(전 미 공군 대령)가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 이스라엘 군사작전과 무력충돌법이란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현역 장군인 Katzir 준장이 이스라엘 방위의 관점에서 기조강연을 하였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의 작전 전개 현황과 이스라엘의 입장을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
업무②	05.16.(목) 컨퍼런스 참석
수행계획	□ 컨퍼런스 참석
수행결과	□ 컨퍼런스 3일 차인 16일(목)은 4개의 주제발표 세션과 1개의 기조강연으로 진행되었음 ○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전략적 관점 세션: - 일본 사사카와재단의 야마모토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vs 국제해양공동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제2 해군으로까지 변모하는 중국 해경의 강화 과정,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인간방패로서의 해상민병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중국의 활동이 국제사회에 위협으로 작용함으로써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함 - 이어서 인도 Rashtriya Raksha 대학의 Karambelkar 교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인도의 시각을 발표했는데, 인도와 이웃하는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로 인해 인도의 동남아 진출에 제약이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인도는 주변국들과 이슈 중심의 협력을 추구한다고 함 - 허드슨 연구소의 Odgaard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대서양 지역과 인태 지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군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생산성과 기술 발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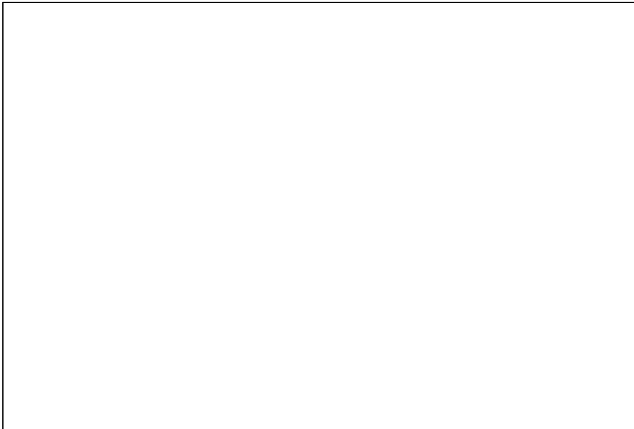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해양영역(maritime domain)에서 직면한 위협 세션: - 필리핀대학의 Batongbacal 교수는 중국과 필리핀이 도서 영유권 및 관할권 분쟁 중인 서필리핀해에서 실제로 중국이 어떠한 활동을 벌이는지를 상세히 소개하였음. 그는 중국이 해경과 해군, 해상민병 등을 동원해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을 “불법적, 강요적, 공격적 행동”으로 규정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해상민병에 대한 처리 문제도 당면 과제라고 지적하였음 - Takeshi 일본 해상자위대 대위는 수중무인기기(UMS)의 법적 지위에 대해 발표함. 그는 UMS가 군함으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해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투 상황에서 운용에 따른 책임이 지휘관에게 귀속되므로 지휘관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적절히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 Hideshi Tokushi 일본 평화안보연구소 소장의 기조 연설: Hideshi 소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법의 지배의 위기”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함.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들이 국제법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강조함 ○ 해전법과 상선 세션: 이 세션에서는 상선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사회는 KIOST의 김원희 박사가 맡았음 - 특히 대만의 Lipin Tien 교수는 로로선(Ro/Ro Vessel: Roll on/Roll off 방식으로 기중기를 사용하지 않고 선박과 부두 사이에 걸쳐 놓은 경사통로를 통해 차량이 그대로 선박에 들어가서 양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선박)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려는 중국 정부의 활동과 법적 문제에 대해 발표함. 그에 의하면, 중국의 국가방위수송법은 로로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군사작전에 참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로로선의 소유자나 승무원들은 군사 지원의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군사 지원 관련 장비를 갖추지 않았으며, 중국인민해방군의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았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위해 로로선을 활용할 때, 이들을 전투원, 민간인, 또는 해상민병 중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함 ○ 해상 하이브리드 전쟁 관련 새로운 문제들 세션: 주제발표 마지막 세션에서는 해전에서 제기되는 “하이브리드” 성격을 다루었음 - 유로파 대학의 Heinegg 교수는 “하이브리드 위협”이란 개념은 “고도의 통합된 계획 하에 사용되는 폭넓은 군사적, 준군사적 혹은 민간인 조치들”이라고 정의함. 그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가 가능한지에 대해 임박한 무력공격(armed attack), 행위 귀속, 제한(필요성, 비례성, 긴급성), 최후의 수단 등의 자위권 요건들을 검토하였지만, 명확한 구별기준 제시는 어려움을 지적함 - Saito Yusuke 일본 해상자위대 대위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주제로 하는 발표에서, 해군이 지정해 놓은 구역(naval zones)을 무시한 채 분쟁 중인 육지에 상륙하는 어민 유사 민간인들은 직접 적대행위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이는 조어도를 두고서 중일 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 어민이 일본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어도에 상륙했을 때 일본에 적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함
업무③	05.17.(금) 컨퍼런스 참석 및 발표
수행계획	□ 뉴포트 매뉴얼(Newport manual on the Law of the Naval Warfare) 논의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수행결과	○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는 지난 해 발행한 해전법에 관한 뉴포트 매뉴얼(Newport manual on the Law of the Naval Warfare)에 대해 토론하였음 ○ 토론의 목적은 현 매뉴얼의 오류와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추후 수정 업데이트된 매뉴얼을 발행하기 위한 것임 ○ 서론 성격의 장을 추가하는 등 전체 체계에 대한 의견, 개별 장들에서 추가해야 할 항목이나 사안들, 기술된 내용의 부정확성 등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음 - 서면을 통해 추후 추가의견을 제시하고, 집필진 참여를 원할 경우 별도로 협의하도록 함 ○ 출장자는 뉴포트 매뉴얼 제1장에서 아프리카, 중국 등의 학자들의 연구업적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적 균형을 맞추 필요성, 제2장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의 개념, 시작과 종료 시점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전체제이면서 수차례 남북간의 해상교전이 있었던 한국의 사례를 소개함. 제3장에 대해 유사항목 중복기술 등 편제상의 중요 오류들을 지적하고, “군함”의 정의에 대한 기술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음. 그리고 제4장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타국의 군사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기술과 관련해서, 이 주제에 대한 국가들의 매우 다양한 실행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가 매뉴얼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국가의 실행과 관련해서 한국의 관련 법률을 소개하고, 또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도 국가들의 다양한 실행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이 뉴포트 매뉴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
------	---

□ 컨퍼런스 관련 사진



※ 경비 세부내역

- 1) 적용기준 : KMI 여비규정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중 나 등급 적용
- 2) 국외출장 공무상 필요에 의해 로밍 신청(공무통화내역 사후 실비정산)
- 3) 로밍이용 요금, 제수수료 등 : 실비정산
- 4) 체재비

출장자	체재비				비고
	숙박비	일 비	식 비	소계	
박영길	주최측에서 제공함	\$35 X 6일 = \$210	(\$78 X 6일) -\$260 = \$208	\$418	뉴포트(나 등급) 회의비 6회 차감 기내식 4회 차감
합계				\$418	

- 재정정보시스템 내 일비 및 식비 자동 환율 계산 미적용으로 원화 수기 기입

* 박영길 - 일비: \$210=289,613원 / 식비: \$208=286,855원

- 환율 : 1\$=1,379.11원 (출장기안일 4. 9 환율)

날짜	매매기준율	전일대비	등락률	현찰 살 때	현찰 팔 때	송금 보낼 때	송금 받을 때
04.09.	1,355.40	▼0.10	-0.01%	1,379.11	1,331.69	1,368.6	1,342.2
04.08.	1,355.50	▲2.50	+0.18%	1,379.22	1,331.78	1,368.7	1,342.3

<별표 2>

국외출장여비 정액표

☐ 국외출장여비

단위 : US\$

직 급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항공 운임
원 장	가	50	160	실비 (상한액: 389)	실비	실비	실비	실비 (Business Class)
	나	50	117	실비 (상한액: 289)				
	다	50	87	실비 (상한액: 215)				
	라	50	73	실비 (상한액: 161)				
부원장	가	40	133	실비 (상한액: 282)	실비	실비	실비	실비 (Business Class)
	나	40	99	실비 (상한액: 207)				
	다	40	72	실비 (상한액: 162)				
	라	40	61	실비 (상한액: 108)				

직 급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항공 운임
선임연구위원으로 최상위부서장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8시간 이 상 (Business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최상위부서장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연구위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가	30	81	실비 (상한액: 176)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0	59	실비 (상한액: 137)				
		다	30	44	실비 (상한액: 106)				
		라	30	37	실비 (상한액: 81)				
행정직	책임행정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선임행정원 전임행정원 행정원	가	30	81	실비 (상한액: 176)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0	59	실비 (상한액: 137)				
		다	30	44	실비				

직 급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항공 운임
					(상한액: 106)				
		라	30	37	실비 (상한액: 81)				

※ 최상위 부서장은 본부장, 부장, 감사실장을 의미

※ 직급별 자격기준

- 선임연구위원 : 박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선임연구위원인 자
- 연구위원 :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구위원인 자
- 상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위원으로, 연구위원은 부연구위원으로 기준 적용

※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구분 등급	대륙	국가 및 도시
가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도쿄, 홍콩, 싱가포르
	남·북아메리카주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유럽주	런던, 모스크바, 파리, 제네바
	중동·아프리카주	-
나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 또는 체류예정지에서 상기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나 등급에 준하여